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국민행복,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4년 1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계량측정제도와 과장 최미애, 연구관 나기형 (509-7230~3)

국표원과 지자체가 저울 특별점검에 나서 !

**- 설 명절 성수기 전 대형마트, 시장 점포 대상
지도·계몽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**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헌)은 설 대목 불량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17개 시·도, 262개 시·군·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
- 점검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, 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, 전통시장, 정육점, 청과물점, 수산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이다.
- 금번 점검은 시장 성수기 직전 마트나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지도·계몽으로 거래 성수기에는 눈속임 및 불량저울 사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되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.
- * 작년 2월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23,571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이중 216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

- 금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 조정, 수평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부터 사용공차 초과, 정기검사 미이행,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점검할 예정이다
- 점검결과 단순 위반의 경우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, 불법개조, 저울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·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.
- 아울러,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,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, 또, 과일,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,
-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량 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 시, 관할 시·군·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나기형 연구관(☎ 02-509-72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점검 개요

- 점검기간 : '14.1.20~1.24(5일간)
- 점검대상 :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
- 점검장소 :
 -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저울은 점검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
 -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, 정육점, 전통시장 등

2. 주요 점검내용

- 위변조·조작, 검정 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
 - (변조 및 조작여부) 봉인 훼손,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
 - (검정 여부) 제작·수입검정 필증 부착유무
 - (사용공차 초과)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공차도 초과
- 구조 및 정기검사 미필 등의 단순 위반 사항
 - (구조불량) 영점 조정장치 불량, 지시부 훼손 등의 불량 유무
 - (정기검사 여부) 수시검사 증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
 - (저울훼손) 눈금판 파손, 수평장치 파손 유무

3. 점검방법

- 위반 계량기는 「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」 제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“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”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

○ 변조 및 조작여부

-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등 봉인 훼손, 탈락(손으로 확인)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
-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

○ 검정실시 여부

- 제작·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

○ 정기검사 여부

-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

○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

- 사용 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“0”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
-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

○ 비법정계량단위 사용, 구조불량 및 기타 확인

-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, 말 등의 사용 여부
-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
- 눈금판,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

○ 사용공차 초과여부

- 분동으로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
 - * 분동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한 기준분동 set(500 g, 1 kg, 2 kg, 5 kg, 10 kg, 지자체별 준비)
- 측정할 곳은 3곳에서 측정함(500 눈금 이하, 500눈금 초과 2,000눈금 이하, 2,000눈금 초과)
- 사용공차 :
 - 3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,000~5,000의 저울이며, 사용공차는 500 눈금

이하는 1등급, 500등급 초과 2,000등급 이하는 2등급, 2,000등급 초과는 3등급임

- 4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,000개 이하의 저울이며, 사용공차는 50 등급 이하는 1등급, 50등급 초과 200등급 이하는 2등급, 200등급 초과는 3등급임

4. 점검결과 처리원칙

- 위반사항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‘부정계량기 처리센터’에 신고하고 계량법에 따라 고발,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
 - 중대위반 : 위·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·중대 사항은 고발조치
 - * 위 · 변조, 미검정(제조사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* 사용공차 초과 하면서 정기검사미필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
 - 단순위반 :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
 - * 단순위반 : 구조불량, 정기검사 미필, 단순 허용오차 초과
 - * 정기검사 미필, 단순 허용오차 초과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, 고의가 아닌 경우 정기검사를 필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계도

5. 기타 행정사항

- 각 지자체별 ‘부정계량기 처리센터’ 운영
- 점검용 분동은 각 지자체별로 준비
- 점검 전 전 오차측정 요령 등 점검방법 숙지
 - * 점검시 기술 또는 행정적 처리 문의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계량검정 센터) 또는 ‘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’에 문의
- 자체점검반과 합동점검을 병행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정·장소 등을 합동점검반원과 협의·추진

참고자료 2**2014 지자체별 ‘부정계량기 신고센터’**

기관	과명	담당자	전화
서울특별시	민생경제과	김현기	02-3707-9337
부산광역시	기간산업과	최광욱	051-888-6704
대구광역시	녹색에너지과	박종건	053-803-4924
인천광역시	기업지원과	이성일	032-440-4965
광주광역시	전략산업과	고광창	062-613-3853
대전광역시	기업지원과	심영만	042-270-3642
울산광역시	경제정책과	이재우	052-229-2732
세종특별자치시	지역경제과	윤재철	044-300-4044
경기도	경제정책과	박영희	031-8008-4575
강원도	에너지정책과	조성학	033-249-2848
충청북도	미래산업과	이호석	043-220-3454
충청남도	일자리경제정책과	이승원	041-635-3318
전라북도	민생경제과	주채영	063-280-3233
전라남도	일자리창출과	송기옥	061-286-3751
경상북도	민생경제교통과	서동걸	053-950-2481
경상남도	미래산업과	도찬성	055-211-2896
제주특별자치도	경제정책과	이기택	064-710-2516